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1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1.

발 의 자 : 박홍배 · 박희승 · 박정현
윤준병 · 백혜련 · 김한규
박 정 · 안도걸 · 김남근
한병도 · 진성준 · 정준호
김태선 · 최혁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,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관리자 포함)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,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 시설의 범위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.

그런데 노인·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 등으로 인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 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공간 확보 및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

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화재 대응·대피에 취약한 시

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

이에, 노인·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(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).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.

가. 노인·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

나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</u>	<u>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.</u> <u>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.</u> <u>가. 노인·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</u> <u>나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</u>

	<u>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⑫ (생 략)	② ~ ⑫ (현행과 같음)